

주주총회의 의사진행요령

정 문 호 전문위원

jmh@klca.or.kr / 2087-7158

1. 서 언

주주총회는 회의체기관이다. 따라서 주주총회를 잘 운영하려면 회의진행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회의체 회의진행에 관한 일반법규는 없으며 필요에 따라 개별법규에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대부분 회의체는 조리(條理)에 의거하여 회의진행을 하여야 하는바 회의진행에 관한 조리란 일반 회의규칙, 즉 일반적으로 보편타당한 회의규칙을 말한다.

가장 널리 알려진 보편타당한 회의규칙으로는 영미에서 오랜 세월을 걸쳐 형성되어 온 만인(萬人)의 회의법 교본이라 불리우는 로버트 회의진행법 (Robert's Rules of Order)이 있다. 한편, 한국회의법학회에서는 일반회의체가 공정, 원만, 신속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국표준회의규칙을 작성 공표하였고 (2003.10.5), 본회에서는 상장회사의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을 위하여 상장회사 표준주주총회운영규정을 제정한 바 있다(1991.12.23).

주주총회는 자본다수결 원칙이 적용되는 등 일반회의체와는 다른 회의규칙이 적용되고, 특히 일반인에게 기업을 공개한 상장회사의 경우는 불특정 다수의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여하고 의결권행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사를 보다 공정하고 원만하며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이 글에서는 주주총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진행에 대한 일반 회의규칙과 함께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의사진행요령을 설명하고자 한다.

2. 의사진행의 일반원칙

회의법에는 많은 회의원칙이 있다. 그 중 토론자유 원칙, 회원평등의 원칙, 다수결의 원칙을 회의법의 기본원칙이라 한다(한국표준회의규칙 제3조). 이 기본원칙은 모든 회의체가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할 원칙이라 할 수 있다.

토론자유 원칙은 모든 회원은 자유롭게 토론에 참가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서 헌법상의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회원평등의 원칙은 모든 회원은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원칙으로 헌법상 평등권을 기초로 하고 있다. 민법에는 사단법인의 회원이 가지는 의결권은 평등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상법에는 주주평등이 아니라 주식평등의 원칙으로서 1주 1의결권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다수결의 원칙은 모든 결의는 의사정족수의 출석에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는 원칙으로 그 결의는 회의에 불참하였거나 기권 또는 반대한 회원을 포함한 회원 전원과 그 회의체에 효력을 미친다.

그 밖의 회의의 중요한 원칙으로,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발언자유 원칙, 회의체에 하

나의 동의가 상정되어 심의중인 때에는 그 동의와 같은 종류의 동의는 제출될 수 없다는 일동의(일의제)의 원칙, 하나의 의안에 대한 심의가 가결 또는 부결로 일단 종결되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회기 중에 그 의안을 다시 다룰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의 원칙 등이 있다.

3. 주주총회 의사진행 순서

회의체는 의장의 개회선언으로 의사활동을 시작하고, 의장의 폐회선언으로 그 활동을 종료한다.(한국표준회의규칙 제14조, 이하 '표준회의규칙'이라 함) 보통 개회로부터 폐회에 이르는 회순은 ㉠ 개회선언, ㉡ 국민의례, ㉢ 의장인사, ㉣ 성원보고, ㉤ 전 회의록 낭독, ㉥ 보고서상, ㉦ 의안심의, ㉧ 폐회선언으로 이루어진다(한국표준회의규칙 제14조).

그러나 주주총회는 보통 ㉠ 개회선언, ㉡ 국민의례, ㉢ 의장인사, ㉣ 보고서상, ㉤의안심의, ㉥ 폐회선언으로 이루어진다.

4. 의장의 역할

(1) 개요

의장은 주주총회 의사진행을 하는 자로서 총회장의 준비에서 의안상정, 심의, 결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총회 전반에 걸쳐 총회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주주총회의 의장은 정관에 규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총회에서 매번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366조의2 제1항). 소수주주가 소집한 총회에서는 이를 소집한 주주 또는 그 대표자가 임시의장으로 총회를 개회하고 즉시 그 총회에서 당일의 의장을 선출한다. 다만, 법원에 의하여 임시의장으로 선임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임시의장이 된다.

(2) 의장의 권한

의장은 의사의 진행자로서 해야 할 일은 의사를 적법하게 진행하는 것, 효율적으로 의사를 진행하는 것,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① 일반적 권한 : 효율적인 의사진행이란 총회 목적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심의를 집중하고, 의제와 관계가 없는 것은 정리하여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의사진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판단권한이 있고, 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주주가 다수결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한다. 예컨대, 개회선언, 의사진행의 순서·방법·의안의 상정 등을 결정하는 권한, 질문자의 지명, 질문사항·시간의 제한, 휴식, 질의의 종결, 표결, 찬성·반대의 수 확인, 가결·부결의 선언, 폐회의 선언 등 의사진행과 관련된 권한은 의장에게 있다.

의사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본래 회의체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회의의 규칙이지만 불특정다수가 모여 회의를 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 의장에게 의사정리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② 의장의 질서유지권 :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직원과 경비원에게 적절한 조치를 지시하고 나아가 경찰관에게 협조를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상장회사표준주주총회운영규정 제14조, 이하 '주주총회운영규정').

의장은 그 총회장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동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퇴장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한다. 또한 의사진행의 원활을 위하여 주주의 발언이나 회수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③ 퇴장명령 : 의장은 현저하게 질서를 문란시켜 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주주 또는 그 대리인이라고 하여 출석한 자가 실제로는 그 자격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때, 의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주주총회운영규정 제15조). 퇴장명령을 받은 자가 스스로 퇴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비원 등을 시켜 강제 퇴장토록 할 수 있다.

5. 개회선언

예정된 개회시각이 되면 의장은 총회의 개회를 선언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개회시각을 늦추어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개회를 선언할 수 있다. 예정된 개회 시각보다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개회할 수 없는 경우 의장은 출석한 주주들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에 따라 총회의 불성립을 선언한다(주주총회운영규정 제17조).

일반 회의체에서는 개회 예정시간에 의사정족수의 회원이 출석하면 의장은 개회를 선언한다.

6. 의안의 상정

의안의 상정은 개회 또는 폐회의 선언과 같이 의장의 전권에 속한다. 의장은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의안을 총회에 상정한다. 각 안건을 순서별로 상정해야 하며 1의제 상정의 원칙에 따라 단일 안건씩 상정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의장은 그 이유를 말하고 그 순서를 바꾸어 상정할 수 있다(주주총회운영규정 제19조).

의장은 상황에 따라 회순을 변경하여 상정할 수도 있고, 하나의 의안을 분할하거나, 복수의 의안을 병합하여 상정할 수도 있다(표준회의규칙 제20조). 의안의 상정 순서와 방법은 의장의 직권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의안의 성격이나 내용이 상호관련성이 있는 경우, 예컨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승인의 건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과 같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그 이유를 말하고 동시 상정하고

심의도 병합할 수 있다.

7. 발언

발언이란 회의에서 구두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주주는 고유의 권리로서 회의에서 발언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의장은 주주들에게 발언할 기회를 골고루 부여하여야 한다.

(1) 발언의 허가

주주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하여 그 허가를 얻어야 발언할 수 있다(주주총회운영규정 제21조). 주주는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이 발언하고 있는 동안에는 발언권을 신청할 수 없다(표준회의규칙 제23조).

즉 주주가 발언권을 신청할 경우에 의장은 원칙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일단 허가를 얻어 발언을 시작한 사람의 발언은 도중에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허가받지 아니하고 발언하려는 사람에 대하여는 의장이 그 중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표준회의규칙 제23조).

발언을 허가받은 주주는 먼저 주주번호와 자기성명(또는 상호)을 밝히고 발언토록 하고 의제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간결명료하게 발언토록 하여야 한다.

(2) 발언의 허용시기 및 발언권 부여순서

주주의 질문 및 발언은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와 각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끝난 후에만 접수하고 그 이전에는 발언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주들에 대한 발언권 부여의 순서는 의장이 결정한다. 발언자의 순서는 ㉠ 발언권을 요청한 순서, ㉡ 이제까지 1회라도 발언한 자인지 여부, ㉢ 바로 직전의 발언자와 반대의견을 가진 자인지 여부(찬반 균형)를 고려하여 의장이 결정토록 한다(표준주주총회운영규정 제22조).

(3) 발언의 제한 및 금지

의장은 주주들에게 골고루 발언의 기회를 부여하면서 회의진행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주주의 발언 회수와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표준회의규칙(제24조)에서는 회원은 하나의 의안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1회의 발언시간 5분이내)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안설명, 질의와 정보요구 및 의사진행발언은 위 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제한은 토론에 한하며, 질의응답 등은 회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의제 이외의 발언, 회의를 지연시키려는 발언, 회의체나 회원의 신용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표준회의규칙 제24조). 이에 의장은 중복된 발언,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 공서양속에 어긋나는 발언, 의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발언, 그 밖에 총회의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에 대하여는 그 금지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표준주주총회운영규정 제25조). 즉 의장의 허가를 얻은 발언이라도 연설조의 장광설이나 의사진행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명확한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킬 수 있다.

8. 주주의 질문

의안이 상정되고 제안설명이 있으면 본격 심의로 들어가며 대개 출석주주로부터 질문이나 의견을 청취하고 의장이 이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의장은 이들의 질문내용을 메모해 두었다가 그에 알맞은 답변을 해야 하는데, 실무에 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관계 임원 또는 실무자를 지명하여 답변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통 주주들의 질문은 찬반의사를 결정하기에 앞서 안전내용에 대한 보충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의제와 전혀 관계가 없는 질문을 하거나 단순히 자기의 견해를 표명하는데 그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한다.

주주의 질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음을 특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표준주주총회운영규정 제27조).

- ㉠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한 것이 아닐 경우
- ㉡ 설명을 함으로써 주주 공동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하는 경우
- ㉢ 설명을 하기 위하여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 ㉣ 질문이 중복되는 경우
- ㉤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질문내용이 경영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으로 공개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발언주주의 양해를 얻어 답변을 유보할 수 있고, 주주가 단순히 의견을 표명하는 성격의 질문에 대하여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로 답변을 끝낼 수도 있다.

주주로부터 특정이사·감사에 대하여 질문이 있을 때라도 의장은 당해 질문에 적절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를 지명하여 응답하게 할 수 있다(표준주주총회운영규정 제26조). 즉 주주가 특정임원을 답변자로 지명하더라도 답변자는 의장이 결정할 수 있다.

9. 의안의 토론(주주의 찬반의견 표명)

의안의 토론시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찬성, 반대의 의견이 번갈아 나오도록 발언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안에 대한 반대의견이라고 하여 발언의 기회를 봉쇄하거나 발언을 제한하여 공연히 편파적인 의사진행으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은 발언자의 수보다 발언자가 갖고 있는 주식수를 의장은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실무적으로 유의할 점은 주주가 '동의'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도 원안통과 동의는 찬성의견에 불과하고 의안의 철회 동의는 의안의 심의 자체를 반대하는 반대의

전인 점 등을 의장은 혼동해서는 안될 것이다.

토론종결동의는 충분한 토론의 기회가 부여된 후에야 제출될 수 있다. 표준회의규칙(제34조)은 찬반 양측에서 각 2인씩 토론이 있기 이전에는 제출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그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의안에 이의가 없는 경우 토론의 즉시종결과 아울러 원안의 통과를 구하는 원안통과동의를 제출할 수도 있다.

10. 주주의 동의

동의란 총회의 의사결정으로 삼고자 주주 등이 총회에 제안을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의의 종류로는 원동의(회의의 주된 목적사항)와 부동의(원동의의 처리를 돕거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동의로 의안의 회부, 기한 부여기, 토론의 종결, 수정 등의 보조동의와, 의제의 분할·병합, 속회 등의 부수동의가 있음), 수정동의(부동의의 일종. 원동의에 대해 그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지는 동의)가 있다.

모든 동의는 적어도 한 주주의 제출과 다른 한 주주의 재청으로 성립된다. 동의 제출은 의장의 발언허가를 얻어야 하나, 재청에는 발언허가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의안을 제안하는 동의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성격상 주주들에게 소집통지·공고된 목적사항에 한정하여 심의 및 결의할 수 있으므로, 부적법한 동의로서 각하해야 할 것이다.

수정동의는 의안 또는 부동의를 대상으로 그 일부에 변경을 가하자는 동의이다. 일부의 변경이란 대상동의와 관련성을 지니는 범위에서의 변경을 말하고, 그 범위 내에는 보완적, 적대적, 경쟁적인 것들이 모두 포함된다. 수정의 방식으로는 개별방식과 포괄방식이 있다. 개별방식에는 ㉠ 삽입, ㉡ 삭제, ㉢ 삭제와 삽입 등 3가지가 있고, 포괄방식에는 대체안 방식 한가지가 있다. 수정동의 자체도 수정의 대상이 된다. 수정동의에 대한 수정 동의를 재수정동의라고 부른다. 재수정동의

는 더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표준회의규칙 제31조).

즉 수정동의는 원동의와의 관련성을 가져야 하며(관련성의 원칙), 원동의에 단순히 반대하는 것, 원동의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동의는 수정동의가 아니다.

수정동의가 성립한 때에는 의장은 총회에 이의 채택 여부를 묻는다. 그러나 의장은 이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그 동의를 심의에 부칠 수 있다. 의장은 수정안과 원안을 일괄하여 총회의 심의에 부칠 수 있다(표준주주총회운영규정 제28조).

11. 동의의 각하

의장은 당해 수정동의에 관한 의안이 심의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거나 심의를 종료한 경우, 이미 부결된 동의와 동일한 내용인 경우, 총회의 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된 경우, 부적법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경우, 그 이외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되는 동의는 채택하지 아니한다(표준주주총회운영규정 제28조).

12. 주주의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이란 회의진행의 원활을 위하여 행하는 발언을 말한다.

즉 의장이 회의진행을 적절하게 주재하지 못할 경우에 주주는 의장에게 이를 촉구하기 위하여 규칙발언, 의안의 분할 또는 병합, 정회, 축조심의, 특청, 일정촉진 등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다. 의장이 주주의 촉구를 받기 이전에 또는 그 이후에 의사진행에 관하여 어떤 결정을 내린 때에 주주가 그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역시 의사진행발언으로서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표준회의규칙 제37조).

회의진행에 관한 모든 사항은 회의체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개회에서 폐회에 이르기까지 의안의 제출, 상정, 심의, 표결을 하는 가운데 회의체가 접하는 모든 사

항은 회의체가 결의로 결정할 문제이다. 그런데 회의진행의 원활을 위하여 일반 회의규칙은 그 중 일부사항의 처리를 의장에게 맡기고 있다. 따라서 이런 사항은 의장이 회의체의 결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의장이 이런 사항을 제때에 처리하지 못하면 주주는 의장에게 그 처리를 촉구할 수 있는 것이다.

13. 의사진행발언의 처리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고 발언권을 신청하면, 의장은 반드시 그리고 우선하여 그 주주에게 발언권을 허가하여야 한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과 부동의들 사이에서 언제나 의사진행발언이 부동의에 우선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의사진행발언은 회의체에 어떤 동의가 계류 중인 때라도 우선하여 발언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진행발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다른 회원의 발언을 중단시키면서 발언할 수는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라면 특정, 일정촉진, 규칙위반, 항의에 한하여 의장은 다른 회원의 발언 중에도 잠시 그 발언을 중단시키면서 발언을 하게 할 수 있다.

주주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의장은 즉시 이에 대하여 직권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 발언내용이 수용할 만한 것이면 의장은 그의 기존 결정을 번복하는 등 그 발언에 관하여 결정을 한 후 의안의 심의를 계속한다. 그 발언내용이 수용할 만한 것이 아니면 의장은 그것을 배척한 후 의안 심의를 계속한다.

의사진행발언은 성질상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이 직권으로 처리할 사항이지만, 그 중 규칙위반 이외의 것은 의장이 회의체에 물어 회의체의 결정에 따라 처리할 수도 있다. 의사진행발언이 항의로 이어지면 어차피 회의체의 결정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의장은 항의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처리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규칙위반에 대한 항의에 대하여는 의장이 회의고문 등 전

문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의사진행발언이 시작되면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최종결정이 내려지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회의체는 이의 처리를 마쳐야 발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의안 심의를 계속할 수 있다. 이들 사항은 제출된 때에 즉시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주주는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총회의 연기, 속행, 검사의 선임, 외부감사인의 출석 요구, 의장의 불신임의 동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들 동의가 제출된 경우 의장은 총회에 그 동의의 채택여부를 묻는다. 이 외의 의사진행에 관한 동의가 제출된 경우에 그 채택여부는 의장이 결정한다(표준주주총회운영규정 제29조). 즉 여타의 절차적 동의 예컨대 휴게, 토론종결 및 각종 의사진행에 관한 동의는 의장이 단독으로 처리하거나 총회의 의사를 물어 처리해도 무방하다.

14. 의안의 표결방법 및 결과의 선포

(1) 표결방법

의안에 대한 가부를 묻는 표결방법은 기립, 거수, 투표, 기타의 방법 중에서 총회의 특별한 결의가 없는 한 의장이 정한다(표준주주총회운영규정 제37조).

표결방법은 상황에 따라 의장이 정할 일이다. 표준회의규칙에서는 원칙적인 방법은 거수이지만 의장은 상황에 따라 기타의 방법에 의하기로 정할 수 있으며, 주주들이 의장의 결정에 항의를 제기하면 회의체의 결의로 그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한다(표준회의규칙 제48조).

의안을 포함한 동의들에 대한 표결은 의장의 표결개시선언으로 시작된다. 의장은 표결개시선언을 할 때는 어떤 동의가 그 대상인지를 밝혀야 한다. 단, 회원들이 그 대상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보일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표준회의규칙 제47조). 의장이 표결개시선언을 하면 회의체는 그 동의에 대한 토론을 계속할 수 없다. 단 표결방법에 관한 의사진행발언만은 허용된다.

표결의 순서는 의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제출된 경우

에는 먼저 수정동의에 대하여 가부를 묻는다. 복수의 수정동의가 제출된 경우에는 원안의 내용과 거리가 먼 것부터 순차로 가부를 묻는다. 그러나 일괄심의회 경우에는 원안을 수정동의보다 먼저 표결에 부칠 수 있다(표준주주총회운영규정 제36조).

찬반의결수가 비슷하여 가부를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투표에 의한 표결에 대비하여 사전에 투표용지를 준비해 놓고 입장시 참석장 또는 위임장과 교환으로 투표용지를 교부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결과의 선포

의장은 의안에 대한 표결이 종료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선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의안의 결의에 필요한 찬성수를 충족한다는 것 또는 충족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으로 족하며, 찬부의 수를 선언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표준주주총회운영규정 제39조).

표결결과 선포란 동의의 가결 여부를 선포하는 것을 말한다. 의장의 결과 선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즉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이의는 그 선포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이다. 의장이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초의 선포를 정정 또는 취소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표결을 실시하여야 한다.

통상 만장일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분명히 반대 의견이 있는데도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찬성다수 등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보다 ‘출석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찬성(보통결의사항)’ 등과 같은 분명하고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 가결을 선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5. 폐회선언

의장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다음 총회의 폐회를 선언한다. 폐회선언시 배당금지급일정 등을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토막 상식

스페이스포트 아메리카(Spaceport America)

스페이스포트 아메리카는 앞으로의 우주여행을 위해 지금의 공항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상업용 우주 정거장이다. 미국 뉴멕시코주 시에라 카운티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발 1,400m이다. 뉴멕시코주에서 소유하고 있으며, 영국 버진 그룹의 자회사인 버진 갤러틱(Virgin Galactic)이 운영을 맡고 있는데 주변에 주민도 적어 우주선 발사에 최적의 장소로 칭하고 있다. 우주 여행 참가자들은 고도 100Km 이상의 우주공간까지 상승하여 약 4분 동안 무중력 상태에서 지구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한다.